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 8.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lc@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기업금융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 법적 근거 신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투자자 보호 등.
	조세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연도 시장평균 주주환원성향(배당성향)의 120%를 초과해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국회 계류안	인사노무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도록 함.
공포 법령	보험	④ 보험업법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제출 없이 병원들이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자동 신청하도록 함.
입법/ 행정예고	건설/부동산	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가 주어지도록 함.

1. 발의안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김재섭 (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규정 중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모든 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통에 관한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재 증권의 유통은 상장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 이에 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자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체계 하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Security Token)을 제도화하면서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의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주요내용 <p>가. 온라인·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함에 따라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투자계약증권은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 단서를 삭제하여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p>	이데일리 24. 10. 28. [마켓인]STO 법안 재발의... 韓 토큰증권 시장 날개달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53766639057512&mediaCodeNo=257&OutLnkChk=Y	24. 10. 25.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나. 상장시장에 해당하는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6조제1항 신설).</p> <p>다.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및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66조제3항 신설).</p> <p>라. 과도한 고위험 투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려 함(안 제166조제4항 신설).</p>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X4Y0X9V0V5T1U0Q1R1P3P8O5M4N6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p>이인선 (국민의힘)</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10년 평균 주주환원율은 29%로 선진국 주식시장 평균인 67%는 물론 신흥국 평균 38%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증시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p>이에 따라 정부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주주환원을 실시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p> <p>그러나 직전 연도 대비 증가만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은 이미 높은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어 추가 증가의 여력이 많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역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게 됨.</p> <p>그동안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온 기업은 외면하고 그동안 주주환원을 외면해온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여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임.</p> <p>따라서, 최소한 신흥국 수준에 맞도록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초과주주환원금액에 대해 100분의 5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3 신설).</p>	<p>머니투데이 24. 10. 29. '밸류업 시대', 기존 주주환원 우수기업도 혜택주는 세제안 발의</p> <p>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2910594292861</p>	24. 10. 25. 제안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Z4H1F0G2F5E0M9L2J1K5J6R9Q7O3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박흥배 (더불어민주당)</p>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지나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20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2040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55.6%로 떨어지는 반면, 65세 고령 인구 비중은 3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음. 일본은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일치하는데 반해 한국은 현재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정년이 60세이지만,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심지어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보여 3~5년의 소득 공백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과 연금재정,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퇴자들이 연금을 지급받게 될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을 연장하는 등 연금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강제하는 추세로 OECD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 정년제 폐지와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권고한 바 있음. 2023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6.7%가 은퇴 희망 시점을 65세 이상으로 밝힌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이에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19조의2). 	<p>헤럴드경제 24. 10. 29. 與 "63세" 野 "65세" 국회도 정년연장 움직임</p> <p>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1029050292</p>	<p>24. 8. 20. 제안</p> <p>24. 8. 21. 소관위 회부</p>

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4N0U8T1U3S1S0R1R6Z4Y5Y0W0X0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p>출처 : https://www.law.go.kr/법령/보험업법</p>	<p>조선일보 24. 10. 25. 금융 당국, '반쪽짜리' 실손보험 간소화 오늘부터 시작</p> <p>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4/10/25/JNNVU VQE7VHYLN2FEW6 MVIPZJ/</p>	<p>24. 10. 24. 일부개정</p> <p>24. 10. 25. 시행</p>

4. 입법/행정 예고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국토교통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235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복합개발사업의 제반 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안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철도·고속버스·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정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도시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은 역승강장 경계의 반경 500미터 이내에 있거나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3) 다만,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내 하나의 공동주택단지가 2만제곱미터 이하면서 전체 부지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도록 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도지사등")이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적 및 비율의 상한을 낮출 수 있도록 함. 	<p>머니투데이 24. 10. 27. 준주거지 용적률 700%로 완화...국토부, 도심복합개발 제정안 입법예고</p> <p>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02517424178515</p>	24. 10. 23. ~ 24. 12. 2.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검토의견 제시내용 및 절차(안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 시·도지사등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복합개발계획의 방향, 혁신지구의 개략적 위치 및 면적,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등은 검토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의 반영여부 및 사유 등 처리 결과를 제출하고, 시·도지사등은 처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함. <p>다. 사업시행자 요건(안 제12조)</p> <p>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를 추가하고, 신탁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을 등록하도록 함.</p> <p>라.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운영(안 제1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함. 2) 토지등소유자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p>마.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안 제26조)</p> <p>조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같은 영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p>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p>바.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비율, 공급유형 및 인수절차(안 제2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합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비율을,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하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함. 2) 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00분의 60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잔여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3)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도록 함. <p>사.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안 제3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함. 2) 영업이익, 시설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0168?pageIndex=2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경향신문][기사] 높아지는 건물만큼 산재도 늘어…중장비 기사들이 위험하다 (2024. 10. 2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10241112001>

주요내용 24일 근로복지공단 '건설기계종사자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종사자의 산재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건설기계종사자는 특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별 공사현장마다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원래는 건설기계종사자 중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음. 하지만, 2019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덤프트럭·굴착기 등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27개 업종 전체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됨. 건설현장이 대형화·고도화됨에 따라 레미콘, 지게차, 굴착기 등 중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고층건물 특성상 중장비를 이용한 작업이 늘어나고 있음.

[한국경제][기사] '중대재해 기소 1호' 제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4. 10. 2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50223i>

주요내용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인 제조업체 대표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이 사고로 16명이 독성간염에 걸렸으며, 대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고, 법인에 대한 2000만 원 벌금도 그대로 유지됨. 유해물질을 공급한 다른 회사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됨.

[대한경제][기사] 실효성 논란 재점화…추가 유예·처벌 수준 완화 목소리 (2024. 10. 3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10301322452520373>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법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음. 올 상반기 80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0% 증가함. 전체 사고 수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건설현장이 줄어 사망자 수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건설업계는 중처법 도입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유예나 처벌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안전관리를 촉진할 인센티브를 제안함.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음.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전주혜
대표변호사

T : 02-3016-7415
E : jhjun@draju.com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김계홍
고문

T : 02-3016-7493
E : kgh1509@draju.com

입법전략센터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기업금융그룹



김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조세그룹



이규철
대표변호사

T : 02-3016-5335
E : kclee@draju.com

인사/노무팀



김보훈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06
E : bhkim@draju.com

보험팀



김상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61
E : kimsy@draju.com

건설/부동산팀



전재기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78
E : jkjun@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



박윤욱
고문

T : 02-3016-5339
E : skyuk23@draju.com